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6. 12. 14.(수) 09:35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12월 7일에 있었던 제69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16-70-28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가> 재허가를 신청한 (주)MBC강원영동 등 33개 사업자 132개 방송국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한다. <나> 허가유효기간은 강릉MBC 등 32개사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하고, 도로교통공단 교통포항FM방송국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 받은 도로교통공단의 타 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한다. <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OBS경인TV에 대해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2월 31일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MBC강원영동 등 34개 사업자 13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은 34개 방송사 133개 방송국으로 TV 23개, FM 67개, 표준FM 21개, AM 22개 방송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6일 ‘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하였고, 6월 30일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8월 4일 시청자 의견청취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그 기간 동안 총 12일간 재허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하였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였습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명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총 34개 방송사 중 700점 이상 1개사, 650점 이상에서 700점 미만 32개사, 650점 미만 1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먼저 총점입니다. 인터넷 매체의 확산과 방송 매체간 경쟁 심화로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감소하고 기타사업 매출이 증가하는 등 매출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재허가 대상 지역방송에서 매출 구조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제작역량, 미래 환경 대응 등에 있어서 중앙과 지역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 저하에 따라 비 방송사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방송사는 위험자산 투자, 고율의 배당성향을 나타내기도 하여 지역방송의 허가 취지인 지역성 구현을 저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MBC의 경우 MBC의 재허가 조건에 따라 본사 경영진의 지역MBC 이사 겸직 비율을 완화하는 등 개선 노력은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최대액출자자의 이사회 지배력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주주 및 주주와 관련이 없는 전문가 그룹의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방송과 관련이 없는 부대사업 추진에 따른 방송사로서 공적채무와 위상 훼손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역민방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보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방송광고 감소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유보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및 방송사업 외 신규사업 투자 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 및 신규사업의 공익성 조화 방안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재허가 조건으로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도록 권고했으나 일부 방송사의 경우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UHD 방송 투자 등 재원수요가 예상되므로 과도한 배당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OBS경인TV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완전자본잠식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향후에도 경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지는 미흡합니다.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기준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는데 방통위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의지 등을 확인한 후에 재허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교방송은 방송광고시장의 감소에 따라 선교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교계성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교단 전입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재원구조 변화와 함께 외부 감사기능 도입 등 경영에 대한 공적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라디오방송의 경우에 공적재원이 투입된 라디오방송의 경우 정기적인 청취율 조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운용 여부에 대한 검증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재허가 대상 방송사의 '13년 재허가 시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재허가 조건 이행 현황입니다. 지역제작비 투자 조건과 관련해서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MBC, 지역 민방에 대하여 총 매출액의 일부를 프로그램 제작비로 사용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자는 조건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았고 지역방송의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민방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방송전문경영인 대표 유지 조

건이 잘 이행되고 있으나, 최다액출자자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를 하고 있는 경우 전문 경영인 제도의 형해화가 우려되므로 전문 경영인의 책임 경영을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권고사항 이행 현황입니다.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과도한 배당 지양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송사는 여전히 전산업 평균 배당성향을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도한 배당은 지역방송사의 제작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14년, '15년 연속하여 전채산업 평균 배당 수준을 초과한 사업자와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민방에서 콘텐츠 투자비율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역민방은 방송광고 감소에 따라 매출액 대비 자체제작 투자비율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 자체 프로그램 제작은 지역민방이 지역성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현행 비율규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지역 MBC에는 없는 자체 편성비율 규제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낮출 필요는 있으나, 그간의 콘텐츠 투자 노력, 배당 성향 등을 바탕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페이지 가장 밑에 보시면 콘텐츠 투자비율 차등 적용 방안으로 <표> 맨 아래쪽에 콘텐츠 투자비율 완화 대상 사업자로 광주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을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MBC 허가기간 일치와 관련해서 지역MBC의 방송 편성, 경영, 재무, 공적 책무 수행은 MBC 본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역MBC 재허가 심사는 MBC 본사 재허가 심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재무적 안정성 평가 지표 개선과 관련해서는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계량평가 지표는 흑자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이지만 운영비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국악방송·영어방송 재단 등은 하위 등급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부의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재허가 심사결과입니다.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를 하되 무선국 혼신해소 등 일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과 미래부 심사 의견에 대한 사무처의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른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50점 이상 평가된 33개 방송사업자 13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가유효기간은 심사평가 점수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원영동MBC 등 32개사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하고, 도로교통공단 교통포항FM방송국은 사업자의 신청과 전파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허가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해 각 무선국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방송사업자별 또는 방송국별로 <붙임 1>과 같이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고,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OBS경인TV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확인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KBS, MBC, SBS, EBS 등 '17년 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12월 중에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재허가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재허가 백서 발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점검 그리고 재허가 제도 개선 정책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34개 방송사업자 또 133개 방송국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꼼꼼하게 심사를 맡아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수고해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쪽 심사를 맡아오셨으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 또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34개 방송사업자 13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너무 많아서 한 달 열흘에 걸쳐서 심사위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일주일에 걸쳐서 방송사 사장과 편성책임자와 최대주주 세 사람을 불러서 의견 청취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점검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 정책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심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사항만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4개 방송사업자 중에서 1개 방송사업자가 650점 미만인데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OBS입니다. 여기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행하지 않아서 과징금도 매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대주주 쪽에서 행정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MBC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13개 지역MBC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했습니다. 다른 민영방송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과 편성책임자와 최대주주 세 분이 나와서 의견청취, 의견진술 하는데 지역MBC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서울MBC (주)문화방송인데 최대주주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의결을 거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 최대주주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만 최대주주 서울MBC 측은 방송·언론사라며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서, 또 하나는 지역MBC의 소유와 경영의 독립, 분리 문제를 점검·확인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꾸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를 내세워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두 차례 계속 보내 와서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들 간에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지역MBC가 별도의 독립 법인처럼 되어 있지만 KBS와 비교해 보면 KBS 지방총국들이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독립법인들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KBS와 지방총국, 서울MBC와 지역MBC의 방송업무나 기능은 동질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KBS의 경우는 지방총국들의 업무내용을 KBS 본사가 다 종합해서 재허가 심사를 받지요. MBC의 경우에도 동질적이기 때문에 그런 실질 절차가 필요한데 지역MBC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인 서울MBC (주)문화방송이 최대주주로서 와서 의견진술을 안 한다는 것은 재허가 심사에 매우 차질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개선해야겠다는 데에 심사위원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MBC 문제와 결들여서 함께 방송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독립의 문제인데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 독

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 배당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말하자면 소유 쪽에 최대주주 대주주들이 경영진 집행부의 이사를 임명해 넣고 심지어 감사까지도 최대주주 쪽에서 임명해서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영에 흑자가 발생하지 않는 데도 배당을 받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그 집행부 경영진 내에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민방의 경우도 최대주주는 수도권 사업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어서 방송의 공공성·독립성과 함께 중요한 가치인 지역성이 훼손되고 소진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MBC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MBC가 집행부 이사, 감사까지 내려 보내고 3개사를 묶어서 공동상무까지 파견하면서 물론 서울MBC의 직은 퇴임했다고 하지만 그 지역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구현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MBC의 경우에는 KBS처럼은 안 되더라도 지역MBC 재허가 심사를 할 때 최대주주로서 별도로 참석을 요청하는 것이 '못 오겠다' 하고 그냥 버티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라도 재허가 기간을 일치시켜서 지역MBC 재허가 받을 때 서울MBC (주)문화방송도 동일한 시기에 재허가 심사를 받도록 해서 그때 최대주주로서의 입장을 점검·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MBC의 최대액출자자인 MBC 본사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 건의사항에도 MBC 본사와 지역MBC의 재허가가 같은 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말에 MBC 본사 재허가 심사를 할 때 이 지역MBC 재허가 기간과 일치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가 허가를 한 UHD와도 기간을 일치시키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잘 준비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지역MBC 또는 지역민방의 경영의 투명성·자율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MBC의 경우에는 재허가 조건에 처음으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위촉하고 감사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지역민방의 경우에도 방송전문경영인의 독립적인 자율성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서 만약에 최대주주가 각자 대표나 또는 공동대표를 할 경우에 업무분장 사항을 명확하게 하도록 해서 방송 부분에는 가능하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또 지역민방 전체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감사 제도 강화 이런 것들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려고 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과 사무처에서 많은 방송사들을 재허가 심사하느라고 상당한 고생을 하신 것 같고 꼼꼼하게 잘 점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논의과정에서 OBS 문제는 사안이 크기 때문에 중간 중간 하기보다도 뒤에 별도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함께 논의할 때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민영방송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의 문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상법이 아닌 방송법에 따라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 이것을 대체로 우리가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법에는 명문으로 소유·경영 분리 원칙이 없지만 저희가 허가 조건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대주주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이냐, 그에 따라서 개입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주회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까지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경영진 인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경영에 개입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까지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허가 조건 및 권고안 <붙임 1> 4페이지 두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책임 경영 실현을 위해 대표이사(각자대표 및 공동대표)' 여기에서 각자대표 및 공동대표라 함은 전문경영인 외에 최대주주가 각자대표나 공동대표를 맡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사람들 간의 업무분장 사항을 정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허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방송정책에 있어서 엄격히 지켜왔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이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갖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유와 방송경영은 예외로 하고 소유와 방송의 편성 및 제작과 분리하는 정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송 경영에는 일정 정도 최다주주가 각자 대표나 공동대표로 해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 업무 분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편성 부분 중심으로 방송법에서 엄격히 보장하고 있는 그쪽 중심으로 가고,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OBS의 최대주주의 노력을 요하고 있지만 경영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최대주주의 책임경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2013년에도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지금과 유사한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부과되지 않고 신고를 받는 것으로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를 용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의견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허가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보다도 저희가 소유·경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심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는 방송사가 이번에 심사를 받은 대구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그리고 KNN 4개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일부 대주주는 경영 부분에 있어서 책임경영 차원에서 관여를 하지만 방송의 편성과 제작 그리고 보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는 방송사가 있는 반면에 아주 세세하게 노사관계 그리고 방송까지 개입하는 대주주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방송경영과 방송편성·제작이 엄밀히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경영 부분에서 최다주주가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가 양해를 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책임경영이라는 명분으로 방송편성과 제작, 특히 보도에 대해서 최다주주가 개입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방송정책 기조로 보면 용인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서 나중에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점검하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다음에 9페이지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건의사항입니다만 '지역민방 콘텐츠 투자비율 조건 완화 검토' 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지역MBC에는 없는 자체 편성비율 규제', 자체 편성비율 규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자체 제작비율 규제가 있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자체 편성비율 규제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체 제작비율 규제는 허가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역민방에 대해서만 현재 자체 편성비율 규제가 있는 것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자체 제작비율 규제는 지역MBC와 지역민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자체 편성비율 규제를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대구MBC의 경우는 자체 편성비율이 17.8%입니다. 그런데 같은 대구지역의 대구민방 같은 경우는 자체 편성비율이 31.5%입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지역에서 지역MBC나 지역민방이나 그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자체 편성비율의 현저한 격차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을...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방의 경우에는 자체 편성비율 규제가 있지만 지역MBC에는 그런 자체 편성비율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실제로 편성하는 비율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MBC에도 그런 편성비율 규제가 있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비율 부분을 차별 규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지역민방 허가 출범 초기에는 지역방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무를 이렇게 강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지역민방들이 출범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를 들어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높이겠다고 해서 같이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차등이 있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 같고 그것은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국회에서 자체제작, 자체 편성비율, 일명 수중계 비율을 자체 제작비율로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됐습니다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2가지로 자체 편성비율, 법에 나와 있는 것과 자체 제작비율로 나와 있는 규제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방송입니다, 경기FM. 제가 작년에 경기방송의 최다주주 변경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당시에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의 요지를 보면 그 당시에 신청했던 신청인이 방송법 위반 전력, 즉 소유 지분 초과, 차명주식 보유 이러한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방송법 위반 전력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최다주주 변경 승인을 불허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이 다시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경기필 그리고 경기필을 소유하고 있는 심기필 회장이지요. 이분들의 지분이 다른 데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점검해 보니까 지난해 최다주주 변경승인 요청을 할 때 지분구조가 어떻게 됐나 하면 경기필 그리고 심기필 회장 그리고 심기필 회장의 국내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회장의 자녀들 두 사람 이 지분까지 포함하면 56.25%로 해서 그때 최다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지분구조를 보면 여기에서 호주건설이 21.1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건설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최다주주 변경승인 시에 가져왔던 소유 지분구조에서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56.25%이고 지금 특수관계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56.2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나 하면 우리 위원회가 수사권이 없어서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호주건설이 최다주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차명의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점검하셨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번 재허가 의견청취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건설 쪽에 직접 질문했을 때 호주건설에서는 “본인 호주건설이 직접 보유한 것이 맞다” 그리고 저희가 재허가 신청할 때도 확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의혹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만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다만 호주건설에 관련해서는 그전에 약 38%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2012년도에 직원들 간에 내부 문제로 해서 그 부분이 검찰에 고발이 됐다가 검찰에서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호주건설의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심이 들지만 저희가 증거를 발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약서를 받도록 했습니

다.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이사회도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서류상으로는 호주건설이 21.16%를 가지고 있어서 최다주주이지만 심기필 씨와 그 특수관계자들 그리고 국내 대리인 격인 부회장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심기필 회장이 최다주주입니다. 그리고 경영권을 행사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 정도의 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법적 흠결이나 여타 문제점들을 우리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근거로서 남겨 놓습니다. 추후에라도 지분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서 재허가 후에 소유 지분 문제로 분란이 발생하거나 법적 다툼이 일어나서 위원회가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추후에 만약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나타난다면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제2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고발과 처벌을 추진했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대구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간의 업무분장사항을 정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업무분장사항을 정해서 제출할 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와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사전 협의를 하고 심사위원회에 나왔던 의견...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최다액출자자가 방송의 편성에 관여하는 임무를 갖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수정하도록 지도할 예정인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지금 지역민방에 대한 자체 편성비율 규제를 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비율이 1차, 2차, 3차에 따라서 또 다 비율이 다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역MBC와 지역민방 사이의 형평성 문제, 자체 편성비율의 문제도 있지만 또 그 지역민방 사이에 자체 편성비율이 다른 것도 지금 와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신속히 검토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규제를 문제제기하고 싶었는데 고삼석 위원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정책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런 형평성 문제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민방의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도 지역민방은 14%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울산·청주방송은 12%로 2% 낮춰진 이유가 어떤 것이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안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기준을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2가지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를 14% 했지만 최근 재허가 기간 동안 '16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14년, '15년 동안 16% 이상 우수하게 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고배당을 해서 방송사의 제작 역량을 약화시킨 방송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을 조합한 결과, 광주·울산·청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가 허가조건이나 그리고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고, 그렇지 못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조건과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14%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따로 마련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KBS 지역국 같은 경우는 약 3%라고 합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KBS는 회계가 분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KBS 제작비의 3%를 지역국 예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광고시장이 침체되고 또 종편들은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지상파, 지역민방 다 광고 실적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도 많이 악화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 규제의 틀 속에서 묶여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현실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방들은 전체 매출 대비 14% 프로그램 제작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액수가 크다, 그래서 광고가 자꾸 빠지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광고 매출 대비로 낮춰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는 안 해 봤지만 저희 실무 선에서는 광고 매출로 하게 된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방송사들은 부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같은 경우 커피사업을 한다든지 심지어 전복 양식사업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부대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은 콘텐츠 제작비 비율에 빠지고 광고만 집어넣는다면 그 부대사업을 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체 매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역민방들은 아예 규제 자체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 달라는데 그것도 검토할 방법은 없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자율규제도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방송 자체가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하면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저희 쪽에 자체 제작비 완화뿐만 아니라 수중계 비율 완화까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방송의 가장 큰 존립 목적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성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점점 낮아지고 허물어진다면 지역방송의 존립 이유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설명을 들어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민방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광고가 자꾸 빠지는 사정들은 감안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포항 FM방송을 보면 조건이 방송편성에서 보도를 제외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현실적으로 매시간 뉴스를 합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는 지역정보나 교통정보, 생활정보들은 저희가 보도로 보지 않기 때

문에 이름을 '뉴스'라고 달았다고 해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도라는 내용을 했을 때 방송법이나 아니면 허가조건을 위배하게 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교통방송들은 '뉴스'라는 이름은 달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생활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전국적으로 FM방송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11개 정도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라디오를 들어보면 이동할 때, 고속도로 타고 갈 때 저도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FM방송은 그야말로 설립 취지에 맞게 또 허가 조건에 맞게 생활정보, 도로교통 상황에 치중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심지어는 논평 기능까지 갖고 있는 뉴스를 점점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허가조건 위반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 혹시 위원님께서 서울교통방송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서울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2개는 별도의 방송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뉴스를 하고 또 논평까지 하고 심지어는 해설도 하고 그런 논지를 갖는 그런 보도 수준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설립 목적에는 크게 어긋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방송법과 그리고 그 전에 만들었던 방송사 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저희가 정책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지난 2014년도에도 일종의 그 당시 표현으로 '유사보도'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방통위 내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데 상당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필요하시다면 논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도를 제외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지상파 재허가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상파방송과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지상파정책, 저는 기본적으로 발전방안, 육성방안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상파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정책 이런 것을 개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규제완화라고 할 수도 있고 표현이 뭐가 됐든, 지금까지 지상파와 관련된 법·제도가 사실은 우리의 정책내용인데 시장도 많이 변화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지상파 정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이런 노력이나 시도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지상파방송 전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루는 정책방안을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파방송 관련해서 광고제도와 관련해서 들여다본다든지, 새로운 서비스인 UHD에 대해서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은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언제부터인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지상파와 관련된 방통위의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리뷰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지상파가 꼭 발전을 해야 하고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치중립적이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견지해 온 그런 제도들이 과연 지금 현재의 시장 환경, 정책 환경 속에서도 계속 그 제도의 취지나 의미가 살아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책 연구과제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의 필요성을 계속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셨지만 심사평가 항목 중에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1,000점 만점에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이 평가항목이 저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항목도 다수이고, 그런데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은 20점밖에 안 됩니다. 제일 최저이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재원 문제, 수익성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계속 정책과 제도 간, 평가항목 간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컨플릭트(conflict) 관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든지 다 충족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허가할 때도 시의적절하게 시장 상황을 봐서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어느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고, 저는 대부분의 문제가 물론 경영 내지는 편성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문제, 지역성 문제 이런 것이 다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과 관

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대사업을 안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부대사업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서로 호환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상파와 관련된 현행 제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가 정말 이제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꼭 그 수식어를 저희가 진흥을 하는 부처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어느 미디어, 어느 특정 방송이 발전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발전하는 것이고 아니면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꼭 특정 매체를 발전시킨다, 제 이야기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큰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이너한 것들인데 6페이지 총평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광고매출은 감소하고 기타사업 매출이 증가하는 등 매출구조가 변화'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심사위원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재허가 조건이라든가 뭐와 연결이 된 것입니까? 앞에 총평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이렇게 때문에 이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재허가 조건을 이것을 붙이겠다, 이런 것이 연결되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총평에 첫 번째로 넣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붙임 2>의 17페이지에 보시면 '방송사업 이외의 부대사업 추진 시, 방송사로서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방송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할 것' 이런 내용들이, 또 부대사업을 하게 되면 위험자산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위험자산 투자시 안정적 경영 기반을 잠식하지 않도록 투자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그 절차에 따라 투자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을 붙이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8페이지 재허가 조건 이행 현황 중에 '지역제작비 투자 조건' 두 번째 줄에 '총 매출액의 일부를 프로그램 제작비로 사용하도록 허가 조건 부여'라고 했는데 저는 표현상 '일부'보다는 '일정 비율'이라는 말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고 과장께서 지역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이슈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종합적으로 다시 리뷰를 전반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자, 이 소리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까 고 위원님은 OBS 이야기를 별도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전상 워딩에 혹시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자는 뜻에서 OBS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2페이지 맨 밑에 <다>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청문을 우리가 거친다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송법 제101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청문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한다는 말은 없어서 그것이 행정절차법이나 다른 데에 청문의 목적이나 의의가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어드린 대로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이런 말이 있어서 그것이 청문이라는 절차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법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이고 그리고 행정절차법에서 절차만 규정이 되어 있지, 실제적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미래부에서 서대구방송을 한번 거부를 두 번 한 적 있는데 그때도 청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청문이나 이런 것들을....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그렇다면 주무기관에서 청문 절차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한다, 그것이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2페이지에 뭔가 청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서도 12월 중에 방송국 허가증 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고표시를 하든 단서를 달든 해서 OBS의 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 향후 계획에도 적시가 되는 것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OBS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페이지에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OBS경인TV에 대해 청문을 개최하여'라는 문구를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이렇게 '청문을 개최하여'라는 문구를 하나 삽입하도록 하고, 향후 계획에도 현재 청문일자가 12월 2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청문 개최하는 날짜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저희 위원회 소관 사무에 지상파 방송정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 이번에 KBS·MBC·SBS·EBS는 해당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재허가를 하는 과정인데 그 심사과정에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중 일부분은 우선 재허가 조건 또는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꼭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런 것들이 내년 말에 4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파방송 정책에 관해서 내년에 일정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표현 고치는 것은 청문 개최한다든지 또는 '일부'가 아니고 '일정 비율' 이렇게 하는 것은 수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선 이 안건을 보면 7페이지와 11페이지에 OBS 측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의지를 확인하고 재허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재허가 여부를 판단해서 의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의결 안에 다른 방송사들과 함께 포함시켜서 의결하느냐, 아니면 재허가를 함께 하지 않고 별도 절차를 거쳐서 탈락을 포함한 절차를 거치느냐를 결정한 뒤에 청문회를 그 후속조치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7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그 판단을 이 회의에서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의결주문 2페이지에 의결주문 <다>번을 보시면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사실은 '확인'이라는 표현에 저희는 청문절차라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문을 거쳐서 확인하여'라고 의결해 주시면 그 자체로 OBS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OBS를 할지 말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별도'라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 않고 의결해 버리면 함께 의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냥 포함시켜서 의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에서 확인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청문도 방통위 내부 절차이긴 합니다만 청문절차에서 확인하든가 그래야 명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페이지 하단에 명확하게 하고 향후 계획에 그 내용을 넣으면, 그렇게 의결하면 OBS는….

○ 고삼석 상임위원

- 별도 의결한다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자칫하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의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 계획을 청문을 거쳐서 확인한 후 의결한다'로 되

어 있으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별도 의결한다'를 넣는 것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별도 의결한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오늘 올린 안건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들 의결할 것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청문일자가 정해졌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여기에 '주OBS경인TV에 대해 2016년 12월 23일 청문을 개최하여 이런 것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됐지요? 그 이후에 한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하고 향후 계획에 한 줄 넣으면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도 논의된 것이 방송의 소유와 경영과 편성의 분리, 독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사과정에서도 저는 지역MBC의 어떤 사장이 왜 지역MBC가 독립방송사인데 독립법인이고 법적으로도..., 서울MBC (주)문화방송이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경영진의 이사를 임명하고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상법상 소유, 대주주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방송의 재허가 심사 절차가 상법에 따른 것입니까? 방송법과 관계 법규에 따라서

하는 절차입니다. 상법이라면 일반기업, 일반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방송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국민 공유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공익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고, 방송사 사장은 방송전문가로 하도록 재허가 심사 때마다 조건부나 권고사항으로 집어넣는 것은 그런 방송법과 관계 법규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지적들을 심사위원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와 방송사의 차이점을 분명히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경영위기에 처한 모 방송사처럼 그런 방송사의 책임경영이 문제입니다.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최대주주의 책임경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거기의 최대주주가 직접 경영을 맡도록 하거나 방송사 사장으로서는 경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위기에 처한 방송사의 경우에는 증자나 추가 투자에 대한 의지를 약속받는 것이지, 직접 경영을 맡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있고..., 편성의 분리, 독립은 방송법에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소유와 경영의 경계선 분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입법 취지로 녹여져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관계법령이고 우리의 재허가 심사 시에 나오는 조건부이고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이고 매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 자유의 논쟁입니다. 방송에 대한 평가와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할 때마다 아마도 나타나는 것이 언론자유 논쟁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 대한 허가·재허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송도 언론입니다만, 방송에 대한 허가·재허가를 하는 것이 언론 자유의 침해입니까? 신문에 대해서는 일체 방송평가처럼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대해서는 재승인·재허가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왜 방송은 합니까? 전파매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공익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근거 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최대주주로서 참석하라고 했더니 언론사이기 때문에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요청이다라고 거부한다면 방송에 대한 허가·재허가 업무부터 이것은 정말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매우 곤욕스러운 일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기에 정리할 것을 분명히 정리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의결해서 인수·인계를 문건으로 넘겨주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 **김석진 상임위원**

- 과거의 MBC 지역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도 본사 사장이 출석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 방통위원회부터 쪽 따져 본다면...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에 관례는 출석 안 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새로 출석을 요구하려면 우리가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BS에 관한 부분 논의를 언제 하실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잠깐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과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가기간을 조정해서 MBC 및 지역MBC가 다 같이 받도록 하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33개 방송사업자 132개 방송국 그리고 OBS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업자,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간, 그다음에 재허가 조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것이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말씀하셨고 저도 애초에 아까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3페이지에 재허가 조건 전문경영인과 최대주주 간의 역할 분담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주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경영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경영 부분에 국한한다고 하면서 최대주주가 각자대표나 공동대표로서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다만, 현재 안건 자체가 사전에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의결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뿐이지, 최대주주가 어떤 형태로든지 대표로서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부대의견을 달아 여기에 적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재허가 조건으로 보면 소유와 방송경영은 할 수 있도록 하되 방송의 편성과 제작이나 보도 이것이 분리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우선 지금 KNN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또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1월에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하시든지 지금 현재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해서 최대주주가 대표이사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방송사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방송의 순수한 경영과 방송·편성·제작 및 보도가 잘 분리되어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명확히 분리가 안 된다면 최다주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내년에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33개 방송사업자 132개 방송국에 대해서 재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허가유효기간, 그다음에 재허가 조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시다만 지금 안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OBS 부분입니다. OBS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듯이 지금 2016년 12월 23일 청문을 개최해서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BS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선 OBS가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점수가 650점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생적 한계 또 대주주가 지금 거의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의 여력이 몇 퍼센트 남아있습니까? 40%에 묶여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39.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0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는 앞으로 투자를 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주주들도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리고 싶어도 대주주가 투자를 못 하는, 한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태생적 한계라고 이야기했습시다만 사실 OBS는 아무래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다른 지역민방처럼 그렇게 중앙방송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0% 자체편성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민방들과 심사를 같은 잣대로 봐서는 안 되는 특별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인천지역에 제2의 민방으로서 나름대로 지역성도 갖고 있고 또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는 그런 방송의 공적책임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용안정, 거기에

한 200명 되는 인력을 갑자기 거리로 내뱉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그냥 청문, 앞으로 23일 청문 때 물론 대주주의 의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만 미리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서 어떻게든 재허가 취소보다는 살려내는 방안을 갖는 것이 허가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 시민단체 또 여러 가지 언론단체들도 OBS에 대해서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문 절차 때 잘 반영이 되어서 가장 좋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붙임 2>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1페이지에 별도로 OBS경인 TV에 대한 심사의견이 있습니다. 이 심사의견을 보면 자체제작실적은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자체제작과 순수외주제작이 지속적으로 줄고 외부 구입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비용 절감형으로만 방송운영이 지속되고 있어서 오히려 경쟁력이 자꾸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전 자본잠식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최대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정상화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재허가 조건에서 50억원 증자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50억원 중에서 얼마를 이행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5억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반도 되지 않는 20.5억원만 증자 계획을 이행하고 지난번 재허가 조건에 다른 증자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앞으로 만약에 재허가를 한다면 3년을 재허가 해야 하는데 그 안에 과연 방송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청문에서 OBS 측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재허가 심사 관련해서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OBS경인TV 쪽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이행 계획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 김재홍 부위원장

- 대표자 의견청취가 제일 중요한 의지 확인인데 최대주주가 참석해서 이야기한 것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소유지분 제한 때문에 더 이상 증자할 여분이 없다, 다 차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억원 약속 중에서 20억원도 안 되게 내놓다가 중단한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살리기 위해서 의지를 보여야 할 것 아니냐, 증자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 회사 인력구조, 조직 상태로는 못한다고 답변하는 것을 듣고 일종의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다액출자

자 최대주주가 정말 경영에 직접 개입하면 구조조정을 해서 살리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자·PD·사원들을 내보내서 경영을 정상화하고 흑자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나눠 먹더라도 임금을 낮춰서라도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취지인데도 회사 전체 규모 조직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이것은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를 고민했는데 그냥 경영 흑자 지상주의, 간단히 말해 돈벌이 지상주의로만 생각하면, 소유 최대주주 측으로 본다면 정말 현재의 상황에 맞게 완전히 다운사이징 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안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해 온 방송사로서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민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또 그 지역 언론인, 방송인들의 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위상과 규모를 유지하면서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나온 것처럼 어떻게든지 살려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청문회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청문회를 하지 않고 방통위원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면담을 해서 의지를 확인하면 될 텐데, 아마도 반복되는 일일 것입니다. 동일한 태도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마지막 단계로 가는 청문을 하고, 물론 청문에서 여부를 확인해야겠지요. 마지막에 거기에서 최대주주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태도로 봐서 그것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살려내겠다, 살려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법규에 있는 대로 청문 절차를 한번 마지막 기회 절차로 갖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영 정상화라고 할까, 방송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의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없어 보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OBS 문제는 우리 제3기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방통위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논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해서도 저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까, 물론 청문회를 주재하는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청문 개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계속 같이 논의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그런 논의와 후속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방송사업자를 그것도 특정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한 공적 서비스로서의 방송을 특정 방송사로 하여금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방송사의 종사자들의 고용의 문제라든가 그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의지만 확인된다면 재허가 거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붙임 2>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12페이지를 보면 지금 심사위원들께서 3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충족될 경우는 조건부 재허가를 검토해 주시라고 의견을 내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무거운 조건이 아닙니다. '30억원 이상의 실현 가능한 자본금 확충방안을 제시할 것, 그리고 회사 유동성 위기 시 최대액출자자의 지원 의사를 명확히 할 것, 적절한 수준의 콘텐츠 투자계획과 이행 의지를 담은 각서를 제출할 것' 결코 이것이 무겁지는 않다고 보는데 왜 대주주 쪽에서 심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 이행도 안 되는데 위원회가 조건부로 재허가를 해 줬을 때 저는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3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재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정명령 그다음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입니다. 또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담보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내준다면 저는 법상에 있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절차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방송사를 운영하는 다른 방송사업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논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대주주 쪽으로부터 분명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그 이상의 지루한 논쟁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청문을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뒷부분은 제 의견과 같은데 앞부분에 더 길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뒷부분...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아닙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절차적인 것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청문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이 부분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해서 다음에 논의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의결주문 <다>에 있는 것처럼 '2016년 12월 23일 청문을 개최해서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에 대해서 의견이 다 같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 미방위의 법안 관련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다른 100개가 넘는 법안이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것은 적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해 왔는데 지난번 KBS, EBS 결산 시에 방통위에서는 저만 참석했는데, 그때 물론 저희는 본격 논의하지 않았고 합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방통위의 공식 의견은 없다. 합의된 것은 없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린다"고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일부 중복될 것인데, 주로는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지만 큰 줄거리는 방송 공정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공정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개인적으로도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생명이 공정성이라고 봤고, 그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방송 공정성 평가 방법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논란에 비추어서 그것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보니까 공정성 평가지수 개발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가시적인 공정성 보장 장치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라고 이야기되는 이사진의 구성 내역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과 야당의 몫이 나누어져 정해져 있고 그 비율이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 대 야당의 몫이 KBS는 7:4, MBC 방송문화진흥회는 6:3, EBS는 7:2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3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 또 공정성은 차치하고 공정성의 한 부분인 정치적인 중립성이 과연 담보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구조이고, 또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로 봐서도 어느 나라든 이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

한 방통위의 입장을 논의해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일 중의 가장 큰 사안 중의 하나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일제히 추천·임명했습니다. 그때 그것으로 얼마나 논쟁하고 고민했습니까?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방통위가 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재량권이 없고 밖에서 7:3, 6:3으로 다 정해져서 명단이 유포되기도 하고 전달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것 하나는 개혁도 아니고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나와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정상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공정성 보장 장치 이것은 방송 공정성 평가방법, 평가지수를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고 주장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여러 논란이 있었고 최소한 그래서 방송사 내부 구성원끼리라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자, 그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편성규약이 있고 편성위원회가 있고 방송 공정성 모니터링 위원회를 뒤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장치를 마련해서 그 내부에서라도 경영진과 제작진 간부와 또 일반 사원 종사원들 간의 이견 분출, 큰 갈등 없이 해 나가야 이것이 최소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방송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그렇다고 이번 방송법 개정안 중에 다른 것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영방송의 이사를 “국회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임명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가 “수용하기 곤란하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절차법이라고 할까, 절차를 잘 다듬으면 정치권이, 원내교섭단체 정당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지 않도록 여과장치를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추천·임명하되 그 절차상 공모절차를 거치게 하고 시민사회나 전문가 단체와 함께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의무화하면 직접 정당이 임명하는 그런 문제점은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적으로 제시해서 이번 국회에 우리 임기 내에 최소한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다수로 의결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탄핵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구 체제, 구 질서에 대한 탄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은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후진적인 문화를 혁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에 대해 깊은 자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국정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공영방송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은 언론도 공범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국회가 방송공정성특위를 운영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2014년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공영방송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정권에 편향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도 드러났듯이 공영방송이 이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배경에는 청와대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현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 이사진의 동조 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국회에 8건의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공영방송 이사 국회 추천 등 공영방송 경영진 및 이사진이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관련법의 개정에 대해서 국회가 결정해 달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우리 위원회도 이러한 논의에 대해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최근에 국정 혼란과 관련해서 공영방송 경영진과 이사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 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과 보도책임자들은 기자들의 취재 보도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해 왔습니다. 그 결과, KBS와 MBC 기자들은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야유를 받고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가장 공정한 언론으로 평가받았던 MBC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시달려 현장기자 마이크에서 자사 로고를 뺀 채 중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MBC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공정성 구현에 책임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촛불집회 참석한 시민들에 대해서 “민노총이나 전교조에서 동원된 사람이다” 그렇게 폄하하고 편향된 그런 인식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계속해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한 우리 공영방송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령상 이들을 강제로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이 일련의 국정 논란과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분노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인사들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 공영방송의 경영진과 보도책임자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은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앞으로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후 4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7분 폐회 】